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법적 근거 마련〉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169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정의 및 신고의무 규정	2
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및 벌칙· 과태료 규정 마련	11
3. 부칙 규정	20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정의 및 신고절차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정의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u>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u>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	5. ----- ----- --- <u>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u> , <u>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u> --- ----- -----

현행	개정안
다. 제27조(허가 등) ① ~ ④ (생략)	--. 제27조(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u><신설></u>	<u>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⑦ 시·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u>⑤ (생략)</u>	<u>⑧ (현행 제5항과 같음)</u>

현행	개정안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업업의 등록이 취소(제1	⑨ ----- ----- - 한다), ----- ----- ---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 ----- -----. ⑩ 제9항----- ----- ----- ----- ----- -----.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 -----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 등록 또는 신고를 ----. 1. (현행과 같음) 2. ----- -----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 ----- -----

현행	개정안
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u>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u>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u>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u>	----- ----- ----- <u>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营业을 하려는 자</u>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营业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营业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营业을 하려는 자 5. ----- 제4호----- -----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u>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u>----- ----- ----- ----- ----- ----- ② ----- ----- ----- ----- ----- ----- ----- <u>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u>

현행	개정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5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 ----- ----- ----- ----- ----- ----- “제27조제8항” ----- -----.

나. 검토의견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함.
- 최근 먹는해양심층수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제조·수입업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¹⁾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1) 주로 시장에서 주문자위탁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등으로 불리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이 이에 해당함.

[표] 해양심층수 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먹는 물	생수	14,319	13,969	28,981	37,656	35,373
	화장품	152,218	146,681	299,602	395,402	373,937
처리수	식품류	34,540	26,266	48,073	82,399	47,426
	소금	143	109	200	342	227
원수	축양 및 수산	1,109	843	1,543	2,645	1,754
	소금	315	240	439	753	499
기타 상품**		5,378	2,264	10,455	4,793	3,612
계*		208,021	190,372	389,293	523,990	462,828

* 본 표에서 각 연도별 계 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용산업 전체 매출액

** 기타상품: 소금, 화장품 등 개발업체 생산 파생상품

***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24년 4월 기준)

- 현재 먹는해양심층수의 생산·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체는 6개사로 총 33개 제품(브랜드)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9개 제품(브랜드)이 유통 전문판매업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표] 먹는해양심층수 및 처리수 제조업체 현황

제조업체명	허가일자	허가기관	생산 제품명
(주)워터비스	'08.4.	강원도	몸앳좋은물, 농협하나로해양심층수(OEM) 등
(주)강원심층수	'09.4.	강원도	천년동안, 베이비워터, 키즈워터, 605M 심층수(OEM) 등
(주)울릉심층수	'09.5.	경상북도	청아라
(주)파나블루	'09.6.	경상북도	미생산
(주)글로벌심층수	'10.6.	강원도	딤스, 풀무원해양심층수(OEM), 사랑해(OEM) 등
(주)솔트로드	'21.4	강원도	JUST기픈물, 마그네슘기픈물, 스노워터(OEM) 등

* 출처 : 해양수산부 제공

이와 같이 먹는해양심층수 제품 중 상당수가 유통전문판매업자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²⁾,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등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음.³⁾

그러나,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미비를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근거하여 영업신고 및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법상 “먹는샘물등”에 먹는해양심층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를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하려는 것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 관련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하여, 안 제27조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제6항에서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과태료 규정 마련

□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폐쇄조치, 광고의 제한 등 행정청의 처분 근거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6조, 제51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현	개 정 안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 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1.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u>제5호</u> -----.

현행	개정안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2.·3. (생략)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 11. (생략) <신설>	----- -----.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8항----- ----- 5. ~ 11.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현행	개정안
②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생략)	<u>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营业을 양도한 때</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u> 3. <u>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현행과 같

현행	개정안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생략) ③·④ (생략)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u>먹는해양심</u>	음) ②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먹는해양심

현행	개정안
<u>충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u>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충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청문) -----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 명령</u> 3.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u>

현행	개정안
5. ~ 8. (생략)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27조제6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 6. (생략) ② (생략)	로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 ----- ----- ---. 1.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4. ~ 8.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9항 -----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판매업자의 의무 등 위반 시 행정청의 처분 근거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판매업 신고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임.

[표] 관련 조문 정리

구 분	현 행	개 정 안
<u>영업정지</u> 또는 허가·등록 취소, <u>영업장폐쇄</u> (안 제32조)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허가·등록 등 취소사유 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가능	○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근거 추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가능
<u>폐쇄조치</u> 등 (안 제46조)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등 규정	○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근거 추가 - <u>미신고 영업</u>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u>영업장을 폐쇄</u> 하게 할 수 있음
<u>광고규제</u> 및 <u>벌칙</u> (안 제51조, 제55조, 제56조)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사유 규정	○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u>제조업자, 수입업자와 동일한 광고제한</u> 사유 적용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 <u>유통전문판매업자 관련 벌칙</u> 추가 - 미신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안 제32조제3항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장 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전문판매업자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임의적 등록취소로 되어 있던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가 개정안에서는 필요적 등록취소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각 업종별로 임의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규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⁴⁾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5조 및 제56조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4) 「먹는물관리법」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않은 자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수입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준의 적정성 및 균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관련 조문 비교

구분		처벌 수준	비고
수입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 제55조)	처벌수준 동일
	변경등록 하지 않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 제55조)	
유통전문 판매업자	신고하지 않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55조)	처벌수준 차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56조)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 입법례⁵⁾를 참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먹는물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의2. 제21조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부칙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부칙 제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면허의 제한)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2조는 기존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해 왔던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신고의무 도입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표] 개정안 부칙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2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문 의 처
02)6788-5418